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10. 13 선고 2020가합103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경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2. 28.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계약을, 피고와 C 사이에 2020. 2. 27.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0. 2. 28. 접수 D로 마친 권리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C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0. 2. 27. 접수 E로 마친 권리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을 하였고, B의 대표자인 C은 위 보증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B의 모든 채무에 대해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은 위와 같은 보증에 따라 F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합계 8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잔액	보증기한	채권은행
2016. 5. 18.	G	285,000,000	2019. 5. 17.	F은행
2016. 5. 18.	H	200,000,000	2019. 5. 17.	F은행
2016. 5. 18.	I	90,000,000	2019. 5. 17.	F은행
2017. 9. 29.	J	170,000,000	2019. 9. 27.	F은행
2017. 9. 29.	K	100,000,000	2019. 9. 27.	F은행

나. B은 2019. 6. 5.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40042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F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8. 22. B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851,292,4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은 2020. 2.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특허권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특허청 2020. 2. 27. 접수 E로 피고 앞으로 권리전부이전등록절차를, B은 피고와 사이에 2020. 2. 28.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특허청 2020. 2. 28. 접수 D로 피고 앞으로 권리전부이전등록절차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양도계약을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위 각 특허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이전인 2019. 8. 22. B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851,292,424원을 F은행에 대위변제하여 B와 C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B와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대위변제를 통해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 F은행을 대위하여 F은행이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를 취득하여 구상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구상금채권 전액을 변제받게 된다면 역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9,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6.

8. 26.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F은행에 B 소유의 밀양시 L 공장용지 6494.6㎡ 및 그 지상 공장 건물과 위 공장에 있는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287,000,000원으로 하는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9. 8. 22. 위와 같이

F은행에 대위변제하고 2019. 8. 30. 변제액 697,000,000원에 대하여 F은행의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받은 사실, M유한회사는 이 법원 N로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0. 3.

16. 임의경매절차 개시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구상금채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참조),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따라 F은행의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근저당권 중 이전받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697,000,000원에 불과하여 구상금채권 전액을 변제받기에는 부족하며, 경매 내지 다른 경위에 의해 구상금채권 전액을 변제받는 등의 원인으로 하여 위 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특허권 외에 3,700,140,400원 상당의 부동산을, C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특허권 외에 56,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B과 C의 각 소극재산은 위 각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1)

2)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B과 C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과 C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과 C에게 이들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각 특허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철, 판사 박인범, 판사 김성인

별 지

특허권의 표시

1. 등록번호(특허)
발명의 명칭
등록일
2. 등록번호(특허)
발명의 명칭
등록일
3. 등록번호(특허)
발명의 명칭
등록일
4. 등록번호(특허)
발명의 명칭
등록일
5. 등록번호(특허)
발명의 명칭
등록일

1) 피고는 B와 C이 이 사건 각 양도계약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